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폭염, 수해, 한파 등)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 보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까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이념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0호 신설).

둘째, 에너지계획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4호).

셋째,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넷째, 포상 대상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

다섯째,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아무쪼록 이번에 정비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에너지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복지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